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1. 11. 9 선고 2021가단1106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1. 10. 19.

판 결 선 고 2021. 11. 9.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D(E생) 사이에 2019. 9. 1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D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2007. 6. 27. 주식회사 G(이하 'G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대출금액 14억 1,000만 원, 대출만기일 2008. 6. 25.으로 정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D은 G은행과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G은행은 2013. 6. 28. 위 대출금채권 및 연대보증금채권을 H 유한회사(이하 'H'라 한다)에 양도하였고, 같은 날 F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나. H는 2016. 3. 24.경 F 및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양수금 소를 제기하였고(2016가합515792호), 위 법원은 2016. 11. 2. 'H에게, 가. F은 379,981,019원 및 그중 230,954,184원에 대하여 2013.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D은 F과 연대하여 1,833,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가.항 기재 각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6. 12. 13. 확정되었다.

다. H는 2018. 11. 30. 원고와 사이에 D에 대한 나.항 기재 판결금 채권을 포함한 자산을 양도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D의 부 I은 2019. 9. 15.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공동상속인들로 배우자 피고, 자녀 J, K, D이 있다.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2019. 9. 15.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한다)을 피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20. 10.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D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별다른 적극 재산이 없었고, 2021. 1. 5. 대구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으며(2021하단21호, 2021하면21호), 2021. 7. 20. 위 각 신청을 취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상태인 D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인 각 2/9 지분을 포기하고, 피고에게 해당 지분을 이전하여 주기로 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D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는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고,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D의 상속지분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역

별지

1. 경북 영덕군 L 임야 1,150㎡
2. 경북 영덕군 M 대 245㎡
3. 경북 영덕군 N 답 1,078㎡
4. 경북 영덕군 O 전 1,564㎡
5. 경북 영덕군 P 임야 10448㎡

